

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9.05.21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.05.07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09.05.08.
- 다. 상정일자 : 제14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09.05.21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김 정 호 교육지원과장

가. 제안이유

상위법 개정에 따라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, 평생교육협의회 추진 체제를 정비하여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현행 제명 “평생학습진흥 조례” 를 ” 평생교육 진흥 조례 “로 변경.
- 2)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1조의 “평생교육법 제9조” 를 “제5조” 로, 제2조제3항의 “평생교육법 제18조” 를 “제25조” 로 변경.
- 3) 평생교육을 “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, 성인기초문자

해득교육, 직업능력 향상교육, 인문교양교육, 문화예술교육,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평생교육 정의의 이해를 돕고자 함.

- 4) 상위법 개정에 따라 “평생학습협의회”의 명칭을 “평생교육협의회”로 하고, 구성인원을 현행 “15인 이내”에서 “12인 이내”로, 위원장을 “부구청장”에서 “구청장”으로 변경.
- 5) 평생학습협의회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협의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.
 - 가) 당연직 위원 :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 학무국장
 - 나) 위촉직 위원 : 평생교육 전문가,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,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
- 6) 현행 “평생학습”을 “평생교육”으로 변경하여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과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평생교육관련 서비스를 포괄하는 의미로써 평생교육을 사용하고자 함.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0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전부개정(시행 2008.02.29, 법률 제 8852호)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된 상위법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, 평생교육협의회 추진체제 정비 및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되었음.

0 본 조례안 중 수정해야할 사항을 보면, 안 제2조는 법령입안심사기준 입법례에 따라 “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”를 동 조문 본문에 신설하고,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, 안 제5조제5항제2호 중 “경험이 풍부한 자 등”은 “경험이 풍부한 자”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타 : 없음